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2026. 2. 2.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경 과

의안 제677호로 2026년 1월 19일 우경란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제고와 함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4조제2항제2호)
- 나.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다.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6.1.20.~2026.1.25.)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 및 그에 따른 지도·감독 가능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됨.

### ○ 종합의견

-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2022.2.3.)<sup>1)</sup>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종전<sup>2)</sup>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체육회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상위법에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5조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1)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개정 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임차료 등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을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며, 영등포구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항목으로 2026년도 본예산 기준 3억 9,500 만원이 편성된 바 있음.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sup>3)</sup>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sup>4)</sup>에서도 법령 위반 등의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안 제8조**에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한 것은 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불필요한 약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 3)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4)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지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참 고 자 료

## 1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44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